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송명화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4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송명화, 송아량, 송정빈, 이세열,
이은주, 채유미, 정지권, 이동현,
김평남, 신정호, 송재혁, 강동길,
김정환, 김광수, 이광성, 김제리,
박순규 의원 (17명)

1. 제안 이유

- 가. 한강시민위원회 내 남북협력분과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정원을 폐지, 보다 탄력적인 남북협력분야 논의가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- 나. 현행 조례의 내용 중 띄어쓰기 등을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함.

2. 주요 골자

- 가. 한강시민위원회 현행 조례에 규정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정원(수) 삭제, 30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22조제2항)
- 나. 그 외 띄어쓰기 등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수정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등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제2조 제1호”를 “제2조제1호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시설은”을 “시설을”로 한다.

제14조제6항 중 “제13조 제1항”을 “제13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제10호 단서 중 “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2”를 “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2”로 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제2항 제2호”를 “제2항제2호”로 한다.

제19조제3항 본문 중 “(별지1호 서식)”을 “(별지 제1호서식)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」 제6조제2항제2호”를 “「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 제6조제2항제2호”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4명”을 “위원장 및 부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24조 중 “기타 이 조례시행과”를 “이 조례의 시행에”로, “시장이 따로

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한강공원”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의 공원녹지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내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를 말한다.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<u>제2조제1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공원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시설은 제4조에 따른 기본원칙 및 「하천법」 등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공원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시설을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4조(이용료) ① (생략)</p> <p>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징수를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운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14조(이용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<u>제13조제1항</u>----- -----.</p>
<p>제17조(금지행위)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</p>	<p>제17조(금지행위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----- -----.</p>

는 행위. 다만,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한강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수단과 청소, 공사, 수리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,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.

11. ~ 15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8조(유어행위 금지) ①、② (생략)

③ 시장은 제2항 제2호와 제3호의 금지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금지구역에서 해제하여야 하며,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19조(금지행위의 단속) ①、② (생략)

③ 제1항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이 제17조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, 위반행위 등 내용을

----- 「자전거
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
조제1호의2-----

-----.

11. ~ 1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유어행위 금지) ①、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제2항제2호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금지행위의 단속) ①、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기재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(별지1호 서식). 다만, 위반자의 도주나 불응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.

제21조(폐기물 처리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공원이용시설의 수탁자나 이용자로부터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차등징수(이하 "종량제"라 한다) 할 수 있으며, 종량제 실시 대상 폐기물은 「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」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다.

③ ~ ⑤ (생략)

제22조(한강시민위원회) ① (생략)

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구성한다.

③ ~ ⑥ (생략)

제24조(시행규칙) 기타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(별지 제1호서식). -----

-----.

제21조(폐기물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「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」 제6조제2항제2호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한강시민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위원장 및 부위원장-----

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----- 규칙-----.